

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올림픽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,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원활히 하며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3조)

- 2023년 10월 16일까지 ⇒ 2028년 10월 16일까지: 5년 연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

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0월 16일에서 (개정)2028년 10월 16일로

5년 연장하여 체육진흥 사업 및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

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,

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